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18. 1. 16

위원정수 : 7명

재적위원 : 7명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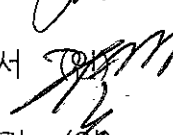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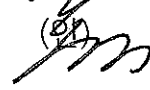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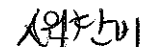
1. 일 시 : 2018. 1. 24(수) 11:00
2. 장 소 : 본 대학 306호 세미나실
3. 참석위원 : 손화희(위원장, 교원), 구건서(교원), 유상기(직원), 서단비(총학생회장), 김보은(대의원회의장), 황주리(동아리연합회장), 박승식(세무사) 이상 7명
4. 불참위원 : 없음
5. 안 건
 - 가. 2018학년도 등록금(입학금) 조정
 - 나.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·의결
 - 다.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 심의·의결
 - 라. 잉여금처리원칙 심의
6. 회의내용
 -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「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의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」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 -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교육부가 입학금을 2018학년도부터 2022년까지 입학실비용(입학금의 33%)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(5년)으로 감축 계획을 발표하여 입학금을 인하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
 -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018학년도 입학금 13.4% 인하를 제안하다.
 - 유상기위원이 입학금 단계적 감축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
 - 서단비위원이 동의하고, 구건서위원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 전원 찬성하여 2018학년도 입학금을 13.4% 인하하는 것으로 가결되다.

- 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위원들에게 2017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위원장은 건물감가상각비 5억원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자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다.
- 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7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- 김보은위원이 동의, 황주리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등록금회계 예산 심사의결에 이어 위원장은 2017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예산(안)을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다시 요청하다.
-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5,000,000원을 비등록금회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,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 및 사용하여야하므로 임의기타기금(발전기금, 100주년기금, 평생교육원기금)과 발생한 이자를 임의건축기금으로 90%, 임의장학기금으로 10%를 목적 지정하여 적립하였음을 설명하다.
- 이어서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, 모든 위원은 2017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이 계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 C J
- 유상기위원이 동의하고, 박승식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위원장은 2017학년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추가경정 예산(안)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(안)을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.
- 위원장은 2018학년도에 강의B동(음악당) 환경개선 공사가 계획되어 공사비로 8,000,000,000원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하여 등록금회계 건설가계정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- 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이 2018학년도 인하된 입학금과 1.78% 인상된 수업료 수입 내에서 적정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- 구건서위원이 동의, 서단비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등록금회계 예산 심사의결을 마친 위원들은 이어서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예산(안)을 면밀히 검토하다.


- 위원장은 비등록금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위원장은 2018학년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5,000,000원을 비등록금회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, 임의건축기금에서 8,000,000,000원 인출하여 강의B동(음악당) 환경개선 공사비로 계상하기 위해 등록금회계 전출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- 황주리위원이 동의하고 박승식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 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이월금)에 의거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들에게 잉여금처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다.
- 위원장은 우리대학은 2018학년도는 수업료를 인상하였지만 최근 계속적인 등록금 인하 및 동결, 2018학년도 입학금 인하로 인해 매년 이월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고, 추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부족예산 편성에 사용하고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- 박승식위원이 동의하고 김보은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
2018. 1. 24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	손 화 희	
위 원	구 건 서	
	유 상 기	
	서 단 비	

김 보 은 

황 주 리 

박 승 식 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18. 1. 24

송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

송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

